

제2804호  
2021. 1. 27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
편집인: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 
전화: 3396-4955  
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선	기관의장
람	

# 구 보

●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제2021-60호 : 「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..... 2

● 고 시

제2021- 9호 :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..... 6  
제2021-10호 :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..... 8

● 공 고

제2021-51호 :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..... 9  
제2021-47호 :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..... 10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 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  
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  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자 치 법 규

[입법예고]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-60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
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  
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021년 1월 26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(2020. 7. 21. 행정안전부 훈령 제 150 호)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 
경비 기준 변경에 따라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등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  
여 직원 후생복지향상을 도모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후생복지사업 추가(안 제7조)
  - 직원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등의 지원근거 신설
- 나.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직위 삭제
- 다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「지방공무원법」제77조 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
  - 2021년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(2020. 7. 21. 행정 안전부 훈령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
- 라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 첨
- (2) 입법예고 : 2021. 1. 27(수) ~ 2. 16.(화) (20일간)
- (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.
- (5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**4. 의견제출**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(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행정지원과,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행정지원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전화: 3396-4522, FAX: 3396-8605, E-mail: lejeho@junggu.seoul.kr)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(<http://www.elis.go.kr/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효율적으로 충족시킬”을 “충족시킬”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우수·효행공무원과 그 가족”을 “유공 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  
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관계법령”을 “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<u>관하여 필요한</u>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 <u>필요한</u>-----.</p>
<p>제5조(선택적 복지제도 운영)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<u>효율적으로 충족시킬</u>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적 복지계획을 수립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선택적 복지제도 운영) ① ----- ----- <u>충족시킬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우수·효행공무원과 그 가족</u>을 대상으로 표창·포상·국내외 시찰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4. ~ 14. (생략)</p>	<p>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--- -----.</p> <p>1. <u>유공공무원</u>----- -----.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</u></p> <p>5. ~ 15. (현행 제4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)</p>
<p>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~③ (생략)</p>	<p>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

④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, 부  
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며,  
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 
자로 한다.

1. (생 략)
  2.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  
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1인
- ⑤~⑧ (생 략)

④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  
고,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  
는 자로 한다.

1. (현행과 같음)
  2.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 
한 법률」 -----
- ⑤~⑧ (현행과 같음)

고 시
-----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-9호

## 도로명주소 부여고시

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월 2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기준
		도 로 명 고시일	도 로 명 부여기준
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 30-5 번지의 3필지	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길 37-3	2021. 1. 27.	남대문시장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 5. 26	남대문시장의 명칭을 반영한 도로명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7-46번지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9길 38	2021. 1. 27.	다산로19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 6. 30.	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3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[www.junggu.seoul.kr](http://www.junggu.seoul.kr)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 고시 후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-10호

## 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월 2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## ○ 도로명주소

도로명주소	지번주소	폐지일자	폐지사유
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9길 38	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7-46번지	2021. 1.27	건물 말소
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길 31-18	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 30-5 외 3필	2021. 1.27	건물 말소
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길 37-3	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 30-5 외 3필	2021. 1.27	건물 말소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3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[www.junggu.seoul.kr](http://www.junggu.seoul.kr)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 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.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-51호

**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**

서울특별시 중구 조직개편(2021.1.11.字)에 따라 부서에서 사용하는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등록·사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1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**1. 관련근거**

-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
-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

**2. 등록공인**

가. 규 격 : 1.8cm × 1.8cm

나. 내 역

- 감염병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- 감염병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 공인명 및 인영

다. 사용일자 : 2021. 1.

라. 사용용도 : 예산 집행 및 물품출납 시 사용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-47호

###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

「공직선거법」제60조의3제3항, 같은 법 제111조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1년 1월 2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	전산자료 복사본 비용	비 고
① 일반명단 A4용지 제공 : A4용지 1매 기준 58원  ② 라벨용명단 제공 : 라벨용지 1매 기준 340원	전산자료 복사본 CD 제공 : (490원×디스크 개수)+(35원×면수)	